


# 평가 결과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연구과제명	국가지정 주요 관리대상 생물종의 국명·영명 부여		
연구기관	국립생물자원관	책임연구원	현진오
부서/부서장	동물자원과	담당공무원(검사/감독)	염진화 김태우
연구자 선정방법	1. [ ] 경쟁입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[ √ ] 수의계약		
연구기간	2018. 6. 8. ~ 2018. 11. 30. ( 6개월 )		
연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명이 없는 국가관리 대상 생물종에 대해 신규 국명 부여 (한반도 고유종, 국가생물종목록, 국제적 멸종위기종, 금지병해충, 관리병해충 등 5개 목록)</li> <li>○ 영명이 필요한 국가관리 대상 생물종에 대해 신규 영명 부여 (한반도 고유종,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2개 목록 중 통용되는 영명이 없어 신규 영명 부여가 상당히 필요한 종)</li> <li>○ 국가 관리대상 고시 외래생물 국명의 적합성 및 임시 국명 재검토(국제적 멸종위기종, 생태계 위해 우려종 등 2개 목록)</li> </ul>		
평가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명칭의 조정과 추가가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추가하여 대체로 부합함.</li> <li>· 추진방법의 적절성 추진절차로 볼 때 적절한 편이나 초기 명명자의 의견수렴이 포함되었는지 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빠진 것으로 보임.</li> <li>· 과업수행의 충실성 전반적으로 과업이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판단됨.</li> <li>·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문제 없음.</li> <li>·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, 오히려 여타 명칭제정에도 지나치게 관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업데이트 노력이 필요함.</li> <li>· 기타사항 국명 및 영명이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학계를 통한 해결책이 시도된 바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음. 일반명 부여 원칙이 학명 제정 원칙보다 훨씬 까다로운 원칙을 갖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큼. 기본원칙 보다는 권고나 지양으로만 적시해야 하며, 그 이상은 학계와 분류학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.</li> </ul>		
평가방법	서면		
평가일시	2018. 12.	장 소	충북대학교
평가자 확 인	구 분	평가전문위원	부서장
	소속·직위	충북대학교 교수	동물자원과장
	성명	조수원 	유정선 